

## 30. 우크라이나(Ukraine)

### 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2년
- 현행법 : 1991년(연금, 1992년 시행), 1993년(수급요건), 1996년(사회보호), 2003년(강제국가연금보험, 2004년 시행), 2004년(사회부조), 2010년(단일납부), 2011년(사회보험)

### 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

### 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고용계약 또는 민법상 계약에 따른 피용 거주자 및 무국적자, 자영자
  - 임의적용 가능
  - 특별제도 : 공무원, 국회의원, 판사, 국립은행 근로자, 외교관, 저널리스트, 과학자, 지자체장, 체르노빌 사고 희생자
- 사회부조 : 우크라이나 시민

### 4. 재원조달

- 근로자
  - 사회보험 : 없음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 - 사회보험
    - 법정 월 최저임금의 22%
   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3,723 hryvnias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15배(55,845 hryvnias)
  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, 실업급여의 재원으로도 활용됨
  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 - 가입임금총액의 22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15배(55,845 hryvnias)
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,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활용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
  - 필요시 중앙 및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급.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기간이 35년(여자 30년) 이상인 60세(여자 58세, 2021년까지 60세로 상향) 도달자
  - 장애가 있는 특정 사람에게 수급요건 감소; 자녀가 5명 이상이거나 장애인녀를 가진 여성; 해롭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로한 자; 체르노빌 사고 피해를 당한 특정 사람
  - 고등교육 수학 기간, 군복무 기간, 장애아 또는 3세 미만 자녀 양육기간, 실업 및 구직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
  - 부분연금 : 가입기간이 25년(매년 1년씩 증가하여 2038년까지 35년으로 상향) 이상인 60세(여자 58세, 2021년까지 60세로 상향) 도달자로 완전 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; 가입기간이 15년(매년 1년씩 증가하여 2038년까지 25년으로 상향) 이상인 63세 도달자로 완전 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  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이후 1~10년까지 연기 가능
  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. 협정이 없는 경우, 수급자 국외 이주시 6개월분의 노령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
- 노령간병인수당(사회보험)
  - 상시간병이 필요한 80세 이상 노인을 돌보는 무급 간병인에게 지급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 -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3세(여자 60세 6개월, 매년 6개월씩 증가하여 2021년까지 63세로 상향) 도달자
  - 사회연금보조금 : 노령사회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1 Group :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상시간병 필요

※1 Group 선정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 : 장애발생 전 최소 1년(25세 미만인 경우)에서 10년(54~59세인 경우)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

- 2 Group :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상시간병이 필요치는 않음

- 3 Group : 일반 근로 장애

※2, 3 Group 선정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 : 장애발생 전 최소 1년(23세 미만인 경우)에서 14년(54~59세인 경우)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

- 장애가 의무 군복무 또는 특정 공공시위 중에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 요건 없음
- 가입기간이 35년(여성 30년) 이상인 3 Group 장애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할 수 있음

• 장애간병인수당(사회보험)

- 1 Group 장애인의 무급 간병인에게 지급

•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연금이나 산재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- 사회연금보조금 : 장애사회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자의 사망연령에 따라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~15년 이상인 경우 지급
- 수급가능 유족은; 배우자, 부친, 수급연령에 도달한 또는 장애가 있는 모친을 포함한 비근로 피부양자; 18세(학생이나 완전고아인 경우 23세, 18세 이전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자녀. 배우자가 없는 경우, 부모, 형제, 조부모에게 지급. 단, 비고용 상태이며 사망자의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지급

- 유족연금보조금 : 유족연금액이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의 100%(유족 1명), 120%(유족 2명), 150%(유족 3명) 미만인 경우 지급.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는 1,373 hryvnias(2018년 7월 1일 기준 1,435 hryvnias)

• 장제비(사회보험)

- 근로자, 학생, 실업자, 이들의 피부양자, 군인연금수급자를 포함한 연금수급자 사망 시 지급
- 수급가능 유족은; 배우자를 포함한 비근로 피부양자; 자녀, 형제 또는 18세(학생인 경우 23세, 18세 이전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손자녀; 부모 또는 조부모

## 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 ○ 노령급여

#### 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만근한 가입기간 1년당 월 평균 기본임금의 1%(실제로는 1.35%)씩 산정
- 월 평균 기본임금은 퇴직연도 직전 36개월간의 평균 국내임금과 가입자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
- 월 최저 노령연금액은, 65세 미만인 경우 1,452 hryvnias, 65세 이상인 경우 법정 월 최저임금(3,723 hryvnias)의 40%
- 월 최대 노령연금액은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의 10배
-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는 1,373 hryvnias(2018년 7월 1일 기준 1,435 hryvnias)
- 부분연금 : 가입기간이 35년(남성), 30년(여성) 미만인 자에게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
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이후 60개월까지 1개월당 0.5%씩 증액. 60개월 이후 연기기간 1개월 당 0.75%씩 최대 120개월까지 연기 가능

#### • 노령간병인수당(사회보험)

- 매월 지급

#### •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의 30~100% 금액을 매월 지급
-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는 1,373 hryvnias(2018년 7월 1일 기준 1,435 hryvnias)
- 사회연금보조금 : 사회연금과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 간 차액만큼 지급
- 급여 조정 : 국내평균임금 및 물가변화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

### ○ 장애급여

#### 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1 Group : 노령연금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
- 2 Group : 노령연금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3 Group : 노령연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
- 월 최저 장애연금액은 1,452 hryvnias
- 월 최저 부분장애연금액은 장애사회연금월액

#### • 장애간병인수당(사회보험)

- 매월 지급

#### •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1 Group :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 100%
- 2 Group :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 80%
- 3 Group :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 60%

-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는 1,373 hryvnias(2018년 7월 1일 기준 1,435 hryvnias)
- 사회연금보조금 : 사회연금과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간 차액만큼 지급
- 급여 조정 : 국내평균임금 및 물가변화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자가 수급할 수 있었던 노령연금 50%(유족 1명) 또는 100%(유족 2명 이상) 지급
- 유족연금보조금 : 유족연금과 장애인의 월 최저생계비 100%(유족 1명), 120%(유족 2명) 또는 150%(유족 3명) 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. 장애인 월 최저생계비는 1,373 hryvnias(2018년 7월 1일 기준 1,435 hryvnias)

• 장제비(사회보험)

- 다음의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
  - 근로자, 학생, 실업자 또는 그들의 피부양자 : 2,200 hryvnias
  - 연금수급자 : 사망자가 수급할 수 있었던 노령연금 2개월분
  - 군인연금수급자 : 사망자가 수급할 수 있었던 노령연금 3개월분
- 급여액 조정 : 국내평균임금 및 물가변화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

## 7. 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정책부(Ministry of Social Policy)

- [www.msp.gov.ua](http://www.msp.gov.ua)
- 정책 결정 및 일반관리

○ 지역사회보호부(Regional and local social protection department)

- 제도 시행

○ 연금 기금(Pension Fund)

- [www.pfu.gov.ua](http://www.pfu.gov.ua)
- 연금 시행

○ 국가재정공단(State Fiscal Service)

- [sfs.gov.ua](http://sfs.gov.ua)
- 보험료 징수